

2021년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신규지원 세부과제 공고

2021년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(이하 사업단) 신규지원 세부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12월 29일

보건복지부장관 권 덕 철

< 2021년도 보건의료 R&D 추진방향 >

◇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&D 투자를 '2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  
- 기초연구·응용연구를 균형 있게 확대

2021년도 전략목표

공익적 R&D 투자 강화로 국민의 보건의료문제 해결,  
첨단유망기술 육성을 통한 국가 주력산업으로의 도약

4대 전략별  
중점 추진방향
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감염병 위기<br>대응 역량 강화     | ① 감염병 상시화에 대비한 예방·진단·치료기술 등 투자 강화   |
| 바이오헬스<br>첨단 유망기술<br>육성 | ② 재생의료 제도 완비 및 중점 지원<br>③ 빅데이터, 인공지능 등 D.NA 기술 연계·활용 투자<br>④ 신약·의료기기 등 차세대 유망기술 중점 지원 |
| 공익적 R&D<br>투자 강화       | 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취약계층 맞춤형 R&D 확대<br>⑥ 치매·만성질환 등 고부담·난치성 질환 극복 중점 투자                      |
| 의료현장 연계<br>R&D 지원      | ⑦ 병원 인프라를 연구 생태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   |

## I. 공고 개요

※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'각 사업별 제안요청서(RFP)'를 확인 요망

※ 선정예정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| 구분               | 공고단위 (RFP명)           |            | 지원규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기간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대상       | 과제구성요건       | 선정예정<br>과제수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1. 국가한의 임상연구분야   | 1-1. 가이드라인 개발         | 근거기반 지침개발  | 100백만원<br>내외/년<br>(1차년도<br>75백만원)  | 2년 이내<br>(1차년도 9개월)       | 학, 연, 병    | 해당 RFP<br>참고 | 5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창출 지침고도화 | 200백만원<br>내외/년<br>(1차년도<br>150백만원) | 3년 이내<br>(1차년도 9개월)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| 2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1-2. 한의 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| 근거창출 연구    | 300백만원<br>내외년<br>(1차년도<br>225백만원)  | 5년(2+3)년 이내<br>(1차년도 9개월) | 산, 학, 연, 병 | 해당 RFP<br>참고 | 3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합성 연구    | 100백만원<br>내외/년<br>(1차년도<br>75백만원)  | 2년 이내<br>(1차년도 9개월)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| 10          |
| 2. 혁신형 한의 중개연구분야 | 2-1. 한의중개 개인연구        | 신진도약       | 80백만원<br>내외/년<br>(1차년도<br>60백만원)   | 3년 이내<br>(1차년도 9개월)       | 산, 학, 연, 병 | 해당 RFP<br>참고 | 13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창의비상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
## II. 신청요건

### □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

- 국·공립 연구기관
-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
- 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
-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·단체(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)

### □ 신청 제한

-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
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
  -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,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
  - \*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
  - \*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

※ 세부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」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, 2021.1.1. 예정) 참조

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·세부 연구 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
-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의 참여 제한기준을 초과할 경우, 선정과제가 탈락할 수 있음

### Ⅲ. 신청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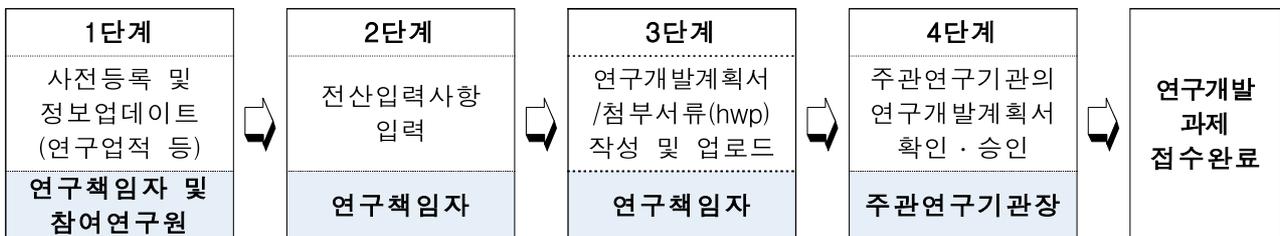
#### □ 신청방법

-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에 접속 후 화면 우측 상단 메뉴에서 'R&D지원시스템 바로가기' 클릭

※ 과제신청은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로그인후 '연구자 권한'으로 신청 가능

-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(전자인증)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

※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 별도 제출



※ 자세한 내용은 공모안내서 참조

#### □ 서류제출기한

- ※ 공고단위(RFP)별 신청마감시간(18:00) 엄수 (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)
  - \* RFP에 따라 신청마감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신청마감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사업별 구두평가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'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 시스템(www.htdream.kr)'에 공지함
- ※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| 공고단위 (RFP)           | 연구책임자<br>과제신청 마감일시<br>(전산입력) | 주관연구기관<br>인증 마감일시<br>(전자 또는 공문제출)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-1. 가이드라인개발         | 2021. 1. 29(금)<br>18 : 00    | 2021. 1. 29.(금)<br>18 : 00        |
| 1-2.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-1. 한의중개개인연구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IV. 관련 법령 및 규정

-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」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」, 등 적용
  - ※ 관련규정은 [www.htdream.kr](http://www.htdream.kr) → 자료실 → 관련법규에서 확인 가능
  - ※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 이후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이 변경 될 수 있음

## V. 기 타

### □ 참여기업 부담금(세부과제별 산정)

- ※ 제안요청서(RFP)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, 해당 RFP 기준 적용
- ※ 참여기업 부담금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하며, 이와 관련하여 협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

### ○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

|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대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견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소기업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               |   | 총 연구개발비 대비 50% 이상                | 총 연구개발비 대비 40% 이상                | 총 연구개발비 대비 25% 이상 |
|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        |   | 부담액의 15% 이상                      | 부담액의 13% 이상                      | 부담액의 10% 이상       |
|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 허용 비목 및 범위 |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   | 현물 부담액의 50% 이내                   | 현물 부담액의 70% 이내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, 재료비,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, 기술도입비 |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% 이내 |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70% 이내 | -                 |

- ※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,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참여기업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: 총 연구개발비 대비 40% 이상. 다만,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25% 이상으로 함
- ※ 그 밖의 경우 참여기업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: 총 연구개발비의 50% 이상

-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중견·중소기업이 청년인력(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)을 1명 이상 신규채용시,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
  -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집행액이 민간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연도 정산시 그 차액만큼 반납하여야 함
- ※ 단, 총 연구수행기간 내 해당 세부과제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, “청년인력 신규채용 기준(5억원당 1명)” 초과 채용 시 적용  
(예 : 5억원 과제 - 2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, 10억원 과제 - 3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)

#### □ 연구시설·장비 도입시 유의사항

- 연구시설·장비(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)의 도입 심의
  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‘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(3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)’을 작성·첨부하여 ‘과제평가단’의 심의를 받아야 함
-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를 구축할 경우 ‘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위원회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)’에서 심의 실시(선정과제 별도 안내)

#### □ 기술료 제도 안내

- 기술료 징수 및 사업단 보고사항
  -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시권의 내용,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두 기관이 합의하여 정함
  - 연구개발목표를 성취한 실용화 과제 중 영리기관에 한해 정부납부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.
    - ※ 비영리법인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면제, 대상과제는 RFP에 표기
  -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에 징수한 기술료와 사용한 결과에 대해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지침」 관련 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을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함

※ 자세한 내용은 공고 안내서 참조

## VI. 문의처

### ○ 홈페이지

- 소관부처 : 보건복지부 ([www.mohw.go.kr](http://www.mohw.go.kr))
- 전문기관 :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([www.htdream.kr](http://www.htdream.kr))

☞ 문의사항은 **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[www.htdream.kr](http://www.htdream.kr)) 질의응답(Q&A)**으로 **질의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능한 신속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### ○ 공고단위(RFP)별 담당자 안내

| 구분              | 공고단위(RFP)            | 사업내용(RFP) 안내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단 담당자      |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국가한의임상연구 분야  | 1-1. 가이드라인개발         | 문원경          | 02-3393-4592<br>wk_moon@nikom.or.kr |
|                 | 1-2.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| 이지연          | 02-3393-4595<br>jyounl@nikom.or.kr  |
| 2. 혁신형한의중개연구 분야 | 2-1. 한의중개개인연구        | 제현영          | 02-3393-4594<br>wp7283@nikom.or.kr  |